

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 안 번 호	998
------------	-----

2000. 10. 31.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의 개정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 (2000. 10. 18)의 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가 일부 조정됨으로써
- 성남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을 조정하여 직무의 공백을 없게 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본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중 “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”과 “성남시농수산물 유통사업소”를 삭제하고 “성남시분당문화정보센터” 다음에 “성남시디자인지원 사업소”를 삽입하는 것으로

3. 검토의견

- “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”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공백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.